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복지용구 이용효과

이태범*[†], 장현숙**
한국전기연구원*, 남서울대학교**

<Abstract>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Tae-Bum Lee*[†], Hyun-Sook Chang**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Namseoul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ssistive products usage on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to assistive products users and non-users among the beneficiary older adults based o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compare function improvement of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Methodes : In national wide 12 community elderly care center enroll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umbers of 281 beneficiary older adults(long-term care Grade I: 66, Grade II: 58, Grade III: 157)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urvey assessment tool for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used the long-term care assessment instrument of the physical functions in the law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The function

* 접수 : 2010년 12월 10일, 최종수정 : 2010년 12월 10일, 게재확정 : 2010년 12월 22일

† 교신저자 : 이태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9 한국전기연구원 의료IT융합연구본부
전화 : 031-8040-4156, 휴대폰 : 019-536-1216 팩스 : 031-8040-4162

items of Activity of daily living were included in clothing, washing, tooth brushing, bathing, eating, posture converting, stand sitting, move sitting, out of room, using toilet, controlling of stool, controlling of urine, washing hair. According to independence to complete dependence functioning level, remarks pointed 1 to 3 poi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wo-way anova using SPSS V. 12.0.

Results : The results appeared that the mean score of the functions in activity of daily living of assistive products users was a 27.60, and that of non-users was a 30.66. Assistive products were not effected in Grade I and II recipients, but that effected in Grade III recipients.

Conculsion : Preparing for activation of assistive products based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result application as follows is possible. The usage of assistive products could improve the function of daily living activity in older adults. Related to Grade III beneficiary elderly people were improved function in activity of daily living by using assis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extend coverage the non-eligible elderly peopl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Key words : *Korean long-term care system, assistive products, older adults, activity of daily living*

I. 서 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9%, 75세 이상 인구는 4.4%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3%, 75세 이상 인구는 21.5%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06). 고령화 사회는 보건의료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후기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노인진료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본격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활동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인정자 수는 2009년 12월 28만7천명에서 2010년 12월 32만5천명으로 급증하고 하였다. 등급인정자 들 가운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이용률은 제도 도입 후 2년 경과 후 87.0%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8월 현재 등급인정자 31만2천명 가운데 장기요양보호 요구가 높은 순위부터 1등급은 49천명, 2등급 75천명, 3등급 189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재가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자는 1등급 20천명, 2등급 31천명, 3등급 136천명으로 분포되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2010).

이는 제도 도입 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가운데 복지용구 급여를 제외한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사업으로 제공되어 왔지만,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과 동시에 급여가 시작되어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 정의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복지용구라는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상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보장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철구, 보장구, 고령친화용품 등의 용어와 혼용되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상당부분 중복된다(장현숙 등, 2006).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용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하고, 고령친화용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이렇게 고령친화산업의 핵심대상은 고령친화용품이라고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복지용구로 분류되고 있다(문인혁, 2006).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되는 복지용구 품목은 총 16종으로 구입 품목은 10종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지팡이, 간이변기,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이며, 대여 품목은 6종으로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용구 품목에 대해 2010년 현재 장기요양등급 인정 1-3등급 노인이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15%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대여 또는 구입을 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http://www.longtermcare.or.kr>, 2010).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구성요소의 하나인 복지용구는 노인들의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노화나 다른 질병의 생리학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다(Andy, 2007). 이렇게 복지용구는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만성질환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이용한 후 일상생활의 기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Stefanie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복지용구 이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기능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1-3등급)는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국 48개 규모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 할당으로 표본 추출한 12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등급인정자 노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등급인정자(1-3등급)들이 등록되어 있는 12개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재지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인 등급인정자들은 등록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로 한정하였다. 방문면담 설문조사에 응답한 등급인정자 노인은 313명이었으며, 주요설문에 모두 응답한 281명 연구대상자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조사방법

연구대상 등급인정자가 등록된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연구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방문조

표 1. 장기요양 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급	수 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 식사, 옷입기,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 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이 기본적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

사 시 요양보호사가 등급인정자(1-3등급) 노인에게 일상생활 기능 수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노인의 답변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대한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기능인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기능 수준을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기능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머리감기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전자립 1점, 부분도움 2점, 완전도움 3점으로 각각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13점에서 39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 자립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9)

품목	용도	품목	용도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	 보행보조차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 외출 시 보행 등에 이용
 보행차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목욕의자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안전손잡이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자립환경을 조성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
 간이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방지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어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구입전용 품목 10종).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esenior.or.kr>

품목	용도	품목	용도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전동침대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수동침대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이동목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침대에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을 물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목욕리프트	하지가 불편한 고령자가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청결 유지와 혈액순환 원활화를 도모하고 수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그림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대여전용 품목 6종).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esenior.or.kr>

3. 자료분석

복지용구를 이용한 등급인정자들과 복지용구를 이용하지 않은 등급인정자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 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5%이하에서 판단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의 구성

복지용구의 이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 중 복지용구 이용자는 80세 이상 89세 이하 연령군에서 각각 35.3%와 32.4%로 가장 많았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복지용구 이용자 중 여성은 68.4%, 비이용자 중 여성은 59.3%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복지용구 이용자 (n=136)	복지용구 비이용자 (n=145)	p 값
연령			
<60	6(4.4)	9(6.2)	0.104
60-69	31(22.8)	28(19.3)	
70-79	44(32.4)	40(27.6)	
80-89	48(35.3)	47(32.4)	
>89	7(5.1)	21(14.5)	
성별			
남자	43(31.6)	59(40.7)	0.114
여자	93(68.4)	86(59.3)	
장기요양 등급			
1등급	31(22.8)	35(24.1)	0.961
2등급	28(20.6)	30(20.7)	
3등급	77(56.6)	80(55.2)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노인들 가운데 등급인정 3등급에서 복지용구 이용자가 56.6%, 비이용자가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2).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별 복지용구 이용 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1등급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5.00이고, 복지용구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5.51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기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2등급에서도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0.32,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1.73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인정 3등급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3.64,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8.14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표 3. 장기요양 등급별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

장기요양 등급	복지용구 이용자 (n=136) mean±SD	복지용구 비이용자 (n=145) mean±SD	<i>p</i> [†]
1등급	35.00±4.37	35.51±5.81	0.783
2등급	30.32±6.45	31.73±5.95	0.455
3등급	23.64±5.04	28.14±6.89	<0.001
계	27.60±7.07	30.66±7.11	0.001

† 연령·성별 보정 *p* value

3. 일상생활 기능 수준과 복지용구 이용 효과

표2의 결과에서 등급인정 3등급에서만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등급인정자의 복지용구 이용효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급인정자의 복지용구 이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이용의 단

일효과와 복지용구 이용과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복합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27.60이고, 복지용구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 점수는 30.66으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4개 항목 항목에서 복지용구 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비이용자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복지용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일상생활 기능수준

일상생활 기능	복지용구 이용자 (n=136) mean±SD	복지용구 비이용자 (n=145) mean±SD	p^{\dagger}	
			이용	이용*등급
옷 벗고입기	2.21±0.56	2.46±0.60	0.005	0.368
세수하기	2.11±0.69	2.37±0.70	0.015	0.286
양치질하기	2.01±0.70	2.30±0.71	0.022	0.043
목욕하기	2.59±0.49	2.75±0.46	0.077	0.028
식사하기	2.06±0.55	2.30±0.63	0.011	0.239
체위변경 하기	1.96±0.73	2.21±0.70	0.079	0.038
일어나 앉기	1.98±0.70	2.30±0.70	0.001	0.641
움겨 앉기	2.01±0.73	2.34±0.72	0.005	0.117
방밖으로 나오기	2.13±0.72	2.37±0.68	0.024	0.282
화장실 사용하기	2.16±0.69	2.37±0.72	0.224	0.044
대변 조절하기	1.96±0.77	2.17±0.82	0.281	0.103
소변 조절하기	1.96±0.74	2.18±0.81	0.194	0.210
머리감기	2.46±0.62	2.54±0.72	0.950	0.075
계	27.60±7.07	30.66±7.11	0.010	0.048

† 연령·성별 보정 p value

IV. 고 찰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급여 복지용구 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2010). 복지용구사업소는 201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243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등급인정자 가운데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보험 도입 년도에 6개월간 약 29천명이 사용하고, 2009년 9월까지 약 12만명이 사용하여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 지원체계 구축(장현숙 등, 2001)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재가노인의 37.2%가 신체장애를 갖고 있으며, 신체장애 부위로 편마비(34.0%), 하지장애(49.2%), 상지장애(6.1%), 전신마비(4.7%)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노인의 기동성 문제(48.6%)와 배변문제(28.8%)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이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목욕, 집밖으로 이동, 개인위생, 배변, 옷입기, 식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보장구는 의치(34.1%), 지팡이(32.3%), 안경(18.8%), 일반형 휠체어(4.9%), 보청기(3.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용품에서도 노인용 기저귀(8.2%), 침대(6.5%), 미끄럼 방지신발(3.7%), 투약상자(8.6%), 혈압계(7.9%), 혈당측정기(3.4%), 손잡이 변기(2.8%) 등으로 나타났다(장현숙 등, 2001). 또한 복지용구는 노인의 신체활동 범위 및 기능수준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진영란 등, 2010). 연구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중증도가 낮은 등급인정자 3등급 재가노인들에게서 복지용구 이용 시 일상생활 기능수준이 개선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등급인정자에 속하지 않는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이용 확대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복지용구 수요기반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70-90대 치매 및 거동 불편한 장기요양 1-3등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복지용구의 이용 후 수급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수발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거동불편, 대소변, 목욕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수발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언급과 재가서비스 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재고가 많으면 서비스 이용이 더욱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복지용구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용구 제공자인 산업체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복지용구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부족, 복지용구 급여 품목 문제, 내구관련 문제 및 판매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9).

현대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용구 이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복지용구 이용 증가는 복지용구 이용자들에게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복지용구의 선택과 이용에 대한 복잡성이 부가되었다(Raymond et al, 1992).

복지용구에 포함되는 의료용구는 환자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진단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능문제와 연계되며, 복지용구 이용 시 대상자 중심으로 활용성, 접근성,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WHO, 2010). 복지용구는 건강증진, 일상생활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이용 시 안전성과 사회성을 고려하고 심리적 요소들이 중요함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예로 가정에서 휠체어 사용이 크게 부각되어 보청기나 응급경보용 목걸이 등이 관심 밖이 되는 경우가 있다(Hendrik N.J et al, 2007),

복지용구 이용 시 건강증진과 기능개선에 중요함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복지용구 급여서비스를 개시 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제도도입 초기 단계로 제도 정착을 해 나아가면서 복지용구 확대 정책개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급인정자 노인들 중 재가노인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5%만이 복지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보험급여 복지용구가 등급인정자 노인들의 자립이나 일상생활기능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보험 급여 복지용구 품목의 효과 모니터링, 품목 선정 및 확대 시 적절성 평가체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한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후 제도 정착을 하는 이 시점에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포함한 품목 16종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현행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품목과 유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급자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선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복지용구 이용 시 등급인정자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기능개선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본 연구결과는 등급인정자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이용이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을 갖고 온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복지용구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목욕리프트와 이동형욕조는 실제이용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되는 복지용구를 이용시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인정 1등급과 2등급, 3등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급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용구 이용자가 일상생활 기능 수준에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급인정 노인들은 등급인정 3등급 대상자로 국한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일상활동의 신체적 기능 개선과 유지를 위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되는 복지용구 16종 외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지기능증진도구 및 배회노인 탐지기, 보청기, 의치, 만성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 예방관리 개선을 가정용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등의 품목도 확대 급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인구수가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 장기요양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이용은 케어인력이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신체기능의 유지 및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노인의 가족과 케어인력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에게도 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상자 욕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이용 지원체계와 효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복지용구 이용시 그 효과를 제한적 수준에서 연구하였으나,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품목 확대를 통한 그의 효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 대상자 확대와 복지용구 품목 조정 및 확대 정책개발 시 일상생활 기능 수준과 복지용구 이용 효과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하는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 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참여 등급인정자 재가노인이 신체기능 욕구에 부합되는 복지용구를 급여 받았다고 전제하였다. 2010년 8월 기준 등급판정자 중 1-3등급 인정자는 약 31만명, 등급외자는 14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등급신청을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의 요양보호 서비스 확대 시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일상활동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급여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2009.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문인혁. 고령친화용품과 스포츠용품, 그리고 표준화, 스포츠과학 2006 ; summer : 76-87
-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8.
-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33호)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용구 소득지침. 2009.
- 보건복지부. 2010년도 장기요양위원회 자료집. 2010. 10. 28.
- 장현숙, 진영란, 홍은정, 유재성, 김정은. 고령친화 용품·기기 대여사업 운영 모델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6
- 장현숙, 김은경, 김동석, 신준호, 박수경.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진영란, 이효영. 복지용구사업소 운영 현황. 한국노년학 2010 ; 30(3) : 803-814.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esenior.or.kr>
- Andy BM. Assistive devices for the adult patient with orthopaedic dysfunction. orthopaedic nursing 2007 ; 26(4) : 226-233.
- Handrik N.J, Schifferstein, Paul H. Product Experience. Elsevier ; 2007. 507-508.
- Stefanie B, Hans WW, Oliver S, David B. Assistive devices use in visually impaired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2005 ; 45(6) : 739-746.
- Raymond WQ, Doreen MB, Assistive communication devic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1992 ; 8(4) : 312-31.
- World Health Organization. Medical Devices : Managing the Mismatch. 2010. pp.11-12.